

『구미숲, 청보리·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1,276명

- 구미시 송정동 454 구미상공회의소 김용창
- 구미시 원평1동 964-186 구미경실련 윤종욱
-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304-3 김봉교
-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602 태양어린이집 오대호외 1,272명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

3. 청원사유(내용)

-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양호동~고아읍 괴평리 간 낙동강 둔치 100만평 중 체육시설 64만평을 제외한 잔여부지 36만평에
 - “구미숲” 과 4.5km 수변경관립을 조성하고
 - 구미광역정수장 맞은편 낙동강 하중도(4만4천평)를 경관농업 경작지(봄~가을)로 활용해 “청보리·메밀 축제공원” 으로 개발해 줄 것을 청원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9호
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, 제75조

- 「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
- 낙동강 기본계획 보고서(재정비 2009.7월)
- 「하천법」
-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(건설교통부 2007.5.29)

5. 검토의견

- 본 청원은 국가하천 낙동강 하천구역 내 둔치(고수부지)의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의 청원사항으로써,
- 하천구역 내 둔치의 효율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는 청원사항의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을 설정하기위해 경제적 타당성, 기술적 타당성,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,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,
- 아울러,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목적시설물의 규모, 배치, 형태, 공사방법 및 기간, 소요비용 등 일반적인 조사 및 분석, 비교, 검토를 거쳐 둔치 활용의 최적안이 도출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,
- 둔치의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하천법, 낙동강 기본계획 (재정비 : 2009.4.2),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(국 토해양부 : 2007.5.29)등,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,
「구미시 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11조 2항에 의거 “**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**”에 해당되므로, **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(附議)함이 타당하다고** 사료됨.

『구미숲, 청보라·메밀 축제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』

의견서(안)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
2. 관련근거 : 「구미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」 제11조 2항 1호

3. 의견내용

국가하천 낙동강 하천 구역 내 둔치(고수부지)의 효율적인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, 경제적 타당성, 기술적 타당성, 사회 및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최적안을 선정해야 할 사항이므로,

본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여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함.

다 음

- 낙동강 둔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종합계획 수립 시 시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,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하여 진정한 수변공간 활용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.

2011. 12.

구미시의회 의원 일동